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개정(안)

2017. 5. 1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일부개정 및 감사 후속 조치로서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관련 세부 지침 개정(안)

< 요약 >

□ 목적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감사후속 조치로서 관련 지침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 시험분석등을 외부기관의뢰시 과제계획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토록 안내문구 신설 (감사후속조치)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 시험분석등을 외부기관의뢰시 과제계획서의 연구개발 내용 및 시험연구비 소요명세서에 연구원이 기재토록 서식 개정 (감사후속조치)
- 제재조치 서식 및 협약서 개정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연구원 제재조치관련 (서식 별표 6), 주관연구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 협동연구협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위탁연구협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단 협약서 (별지 제51호 서식)

(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시제품·시작품 예산집행관련 승인사항 및 부당집행기준 신설 (감사후속조치)
 - *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신설 집행할 경우 사업담당 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연구원 특근식대 세부기준 신설 (감사후속조치)
 - *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금후 계획

- 운영규정 지침 서식 ATIS 게시 (~5.19)



I | 목적 및 대상

□ 목 적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감사 후속 조치로서 관련 지침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연구운영과-1395('17. 3.13), 감사담당관실-745('17. 3.16.) 및 - 1105('17. 4.21)

□ 대 상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서식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II | 주요 개정 내용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붙임1>

- 시험분석등을 외부기관의뢰시 과제계획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토록 안내문구 신설 (감사후속조치)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붙임2>

- 시험분석등을 외부기관의뢰시 과제계획서의 연구개발 내용 및 시험 연구비 소요명세서에 연구원이 기재토록 서식 개정 (감사후속조치)
- 제재조치 서식 및 협약서 개정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연구원 제재조치관련 (서식 별표 6)

- 주관연구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 협동연구협약서 (별지 제9호 서식)
 - *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 위탁연구협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 *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단 협약서 (별지 제51호 서식)
 - * 제16조(관계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제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붙임3>

- 시제품·시작품 신설관련 승인사항 및 부당집행기준 신설 (감사후속조치)
 - * 시제품·시작품을 신설할 경우 사업담당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 * 시제품·시작품을 신설할 경우 사업담당부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 특근식대 세부기준 신설 (감사후속조치)
 - *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붙임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IV.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라.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대과제 책임자가 검토한 후 사업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

<연구내용 중에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분석 등이 포함될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시험·분석·검사 등을 의뢰 시 과제계획서에 관련내용을 기재

V.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나. 협약서 검토 및 승인

- 대과제 책임자가 검토한 후 사업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

<연구내용 중에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분석 등이 포함될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시험·분석·검사 등을 의뢰 시 과제계획서에 관련내용을 기재

<붙임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개정(안)

세부·협동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다. 연구개발 내용 (구체적으로 1페이지 이상)

※ 연구개발 내용 중 외부기관에 시험·분석·검사 등을 의뢰 시 내용 기재
예) OOOO 분석 (외부기관에 의뢰)

6. 연구개발비

6-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시험·분석·검사 등 외부기관 의뢰내역

(단위 : 천원)

의뢰내역	규격	수량	금액	의뢰사유

【별표 6】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구 분	과제선정시 가·감점			제재기준				비고	
	가 점	감 점	적 용 기 간	과 제 수 행 여 부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기간				출 연 금 환 수 기 준
					1회	2회	3회 이상		
<가점부여 항목>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과제(상위10%이내 이면서, 평균90점이상)”로 선정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	5		2년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미래부 주관)”에 선정된 연구자	3		3년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원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	3		3년						
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농진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	3		3년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부여 및 제재조치 항목>									
1. 연구과제 평가 관련 사항									
가. 연차평가 결과	1) 하위 10%미만 과제 또는 ‘미흡’ 과제(60점 미만 및 평가위원 50%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				중단	-	-	제재심의	
					세부 과제 중단	-	-	제재심의 (경고 및 중점관리)	
					중단	농촌진흥청 사업 3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제재 심의	
나. 최종평가 결과	1) ‘미흡’ 과제(60점 미만 및 평가위원 50%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					농촌진흥청 사업 3년 이내	-	제재 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구 분	과제 선정시 가·감점			제재기준				비고	
	가 점	감 점	적 용 기 간	과 제 수 행 부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기간				출연금 환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p>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p> <p>라. 실패,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p> <p>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청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경우</p> <p>2)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p> <p>3)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p>					면제			-	
<p>마. 추적평가 결과 : 미흡과제(60점 미만) 이하</p>		5	2년		-			-	
<p>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p>					국가연구개발 사업 4년 이내 (해외인 경우 10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p>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비공개 최종보고서 입의 공개 포함)</p>					2년	3년	4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p>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p>					5년	7년6개월	10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p>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p>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	
<p>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p>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p>가. 포기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p> <p>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p> <p>2)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3)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p> <p>나. 총 수행기관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p>					면제			-	
<p>다.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p>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구 분	과제 선정 시 가·감점			제재 기준				비고	
	가 점	감 점	적 용 기 간	과 제 수 행 부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기간				출연금 환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제재 심의
가. 미납의 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3)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에 의해 실용화 지연 및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등으로 납부연장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면제	-	
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제재 심의
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파산의 경우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3) 폐업, 부도의 경우 4)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제재 심의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	제재 심의
마. 기술료납부계획서 또는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바. 해당 기관(기업)이 경상기술료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	제재 심의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형령·편취·유용 등)로 부정집행한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6년 이내									

구 분		과제 선정시 가·감점			제재기준				비고	
		가점	감점	적용 기간	과제 수행부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기간				출연금 환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연구 개발비를 횡령, 편취 (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 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중단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6 개월 초과 6년 이내	편취한 금액	제재 심의
	-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 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 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 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 집행금액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 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 한 경우								해당 금액	
	-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 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전용금 이내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8년 이내										
1) 연구 개발비를 횡령, 편취 (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 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중단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편취한 금액	제재 심의
	-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 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 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 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 집행금액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 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 한 경우								해당 금액	
	-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 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전용금 이내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4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0년 이내										

구 분	과제 선정시 가·감점			제재기준				비고	
	가 점	감 점	적용 기간	과제 수행부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기간				출연금 환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연구 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중단	5년 이내	5년 초과 7년6 개월 이내	7년6 개월 초과 10년 이내	편취한 금액	제재 심의
	-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 집행금액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 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4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5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4년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중단	5년	7년6 개월	10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면제		-		
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로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	제재 심의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既)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6 개월 이내	4년6 개월 초과 6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8. 그 밖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구 분	과제 선정시 가·감점			제재기준				비고	
	가 점	감 점	적 용 기 간	과 제 수 행 부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기간				출연금 환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	제재심의
1) 회생·파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1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제재심의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3) 폐업, 부도의 경우					면제			해당 금액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가)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국가연구개발 사업 1년			연장 해당 금액	
5)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1년			해당 금액	제재심의
6)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7)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			-	
다.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심의
마.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제재심의
바.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심의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1년			-	제재심의
아.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기업		5	2년						
자. 승인 공문 없이 6개월 이상 외국 출장의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제재심의
차. 과제와 무관하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연구성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 사업 2년 이내				제재심의
카. 농진청 내 다른 과제 또는 타부처의 과제에 대하여 수행 중단이 되었을 경우,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단	-			-	제재심의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3년						
파. 그 밖에 중요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2년 이내			-	제재심의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로 시행

주관연구협약서

제1조 ~ 제18조 (생략)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운영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③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 2항의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④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20조 ~ 제25조 (생략)

【별지 제9호 서식】

협동연구협약서

제1조 ~ 제18조 (생략)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책임자, 연구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운영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③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 2항의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④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20조 ~ 제24조 (생략)

위탁연구협약서

제1조 ~ 제13조 (생략)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 연구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운영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③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 2항의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④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15조 ~ 제19조 (생략)

사업단 협약서

제1조 ~ 제15조 (생략)

제16조(관계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제재) ① 사업단장은 본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규정 등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운영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 2항의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③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17 ~ 제19조 (생략)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3) 연구장비·재료비

③ 세부 사용기준

○ 승인사항

- 사전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신설 집행할 경우 농진청 사업담당(협약)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④ 부당집행

○ 농진청 사업담당(협약)부서 승인 없이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신설 집행한 경우

(5) 연구과제추진비

③ 세부 사용기준

○ 식대 : 참여연구원 특근식대

- 특근식대 지급대상자는 정규 근무시간(09:00~18:00)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함

